#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56 발의연월일: 2022. 11. 15.

발 의 자:최연숙·권은희·노용호

류호정 • 서정숙 • 윤두현

이태규 · 정찬민 · 조명희

허은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장례 절차를 제때 밟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기존의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있는 화장로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 대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화장시설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 조). 법률 제 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갖추어야 한다"를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생 략)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②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u>갖추어야 한</u>	<u>갖추어 매</u>
<u>다</u> .	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
	야 한다.
<u> &lt;신 설&gt;</u>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화장
	<u>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u>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